

# 투자시 지분법을 파악하라

## 무조건 투자(?)하기(1)

글 \_ 조완석(공인회계사)

‘무조건 투자(?)하기’라는 제목이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다. ‘증권사도 아니고 투자자도 아닌 일반회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?’라고 생각할 만도 하다. 그러나 증권사나 투자자가 아닌 일반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에 더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기업회계기준에는 명시되어 있다. 이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조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실무적으로 발생했던 사례를 들어보면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풀릴 것이다. 우선 사례를 들어 그 실무적 의미를 살펴보고, 차차 관련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 등의 절차와 적용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.

제조업을 영위하는 T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50%를 초과하는 소수자 경영의 지배구조를 가진 중소기업이다. 작년도 결산기에 재무담당 팀장은 사장에게 당해년도 예상손익을 세전 경상이익 2억으로 보고했고, 사장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. 그러나 이 회사의 경우 사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컨설팅 법인에 1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으며, 그 지분율이 약 20%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나 담당 팀장은 이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. 이후 기말 회계감사 시점에서 지분법을 적용한 결과 피투자회사의 당기 순손실액 3억원 중 약 20%정도인 약 6000만원을 ‘지분법평가손실’로 보고하게 되었고 사전에 순이익을 보고한 팀장은 매우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.

그럼 두 번째는 이보다 조금 복잡했던 경우를 살펴보자. IT업계의 중견기업인 S사는 약 3년 전부터 피투자회사에 투자를 하고

있으며, 회계담당자도 지분법에 대한 규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다. 그러나 이 회사의 경우 투자시점부터 지분법 적용에 대한 부담과 피투자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 지분율을 19.5%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지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왔다.

이를 위하여 피투자회사에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상증자 후 지분율이 20%가 넘지 않도록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온 것이다. 그러나 당기말에 피투자회사가 수행한 유상증자에서 단주가 발생했고, 피투자회사는 소각처리를 위해서 이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.

그러나 투자회사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. 하지만 지분율 산정의 경우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는 지분율 산정 시에 제외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투자회사의 실질 지분율은 20%를 초과하게 되어 강제적으로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는 황당(?)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.

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결과는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회계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. 이는 지분법 회계처리가 실무적으로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만큼 많은 관련 예규와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. 각자의 회사에 투자유가증권이 있는 독자의 경우 위의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자신의 회사의 경우와 비교하게 되었을 것이다. 다음 호에서는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포인트 위주로 지분법에 대한 규정과 적용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.